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경찰·소방 공무원 추가〉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4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경찰·소방 공무원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범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훈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만을 수여 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군인·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경찰·소방 공무원 추가

개정안은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현행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¹⁾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근정훈장) ----- - <u>군인·군무원 및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u> ----- ----- ----- ----- ----- ----- ----- ----- ----- -----.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u>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u> 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5조(보국훈장) ----- <u>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u> 에게-----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훈법」 제24조(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생략)

현행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훈장은 12종류로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는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지고, 훈장간 차등은 없으며 패용시 우선순위만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 >

훈장	수여대상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무궁화대훈장	대통령·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등급없음		
건국훈장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국민훈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무공훈장	전시(비상사태), 전투참여 유공자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근정훈장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정려자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수교훈장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광화대장 광화장	흥인장	송례장	창의장	숙정장
산업훈장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새마을훈장	새마을 운동 유공자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문화훈장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체육훈장	체육발전 유공자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현행 서훈 체계는 공무원을 기본적으로 근정훈장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²⁾, 국가안전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군무원의 경우 분단상황

2)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에서 항상 전시에 대비해야 하는 특수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정훈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신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군인·군무원 이외의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음.

한편, 근정훈장과 보국훈장 간 차등은 없음에도, 보국훈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³⁾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해당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근정훈장에 비해 보국훈장이 선호되는 측면이 있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혜택 >

지원혜택	보국훈장 수여자
교육지원	- 생활수준조사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100% 이하자
의료지원	-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60% 감면 - 생계 곤란한 가구에 1종 의료급여 지원
취업지원	-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해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시 가점 ※ 가점 : 본인 10%, 배우자 5%
생활조정수당	- 본인 또는 유족이 생계곤란자일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원
국립묘지 안장	- 해당 없음 ※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의 경우 가능

※ 자료: 국가보훈부 블로그(2022.7.29.)

3)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7. (생략)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 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의 수여 대상을 보면, 각각 군인·군무원의 비중이 97.1%, 96.0%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국포장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추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인·군무원 위주로 상훈이 수여되고 있음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보국훈장 수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퇴직포상	국군의 날	국가안전보장	우호증진	순직추서	기타 업무유공
군인	3,841	3,480	356	-	-	2	3
군무원	1,425	1,413	12	-	-	-	-
공무원	34	-	-	34	-	-	-
외국인	106	-	-	-	106	-	-
민간인	16	-	9	-	-	-	7
합계	5,422	4,893	377	34	106	2	10

※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보국포장 수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퇴직포상	국군의 날	국가안전보장	우호증진	순직추서	기타 업무유공
군인	974	892	77	-	-	-	5
군무원	265	254	11	-	-	-	-
공무원	35	-	-	35	-	-	-
외국인	0	-	-	-	-	-	-
민간인	16	-	-	-	-	-	16
합계	1,290	1,146	88	35	-	-	21

※ 자료: 행정안전부

4) “공무원”은 모두 국정원 소속 직원이며, “민간인”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소속 직원임.

이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퇴직공무원 포상이 군인·군무원
은 보국훈장·보국포장으로, 경찰·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근정
훈장·근정포장을 수여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현행 상훈 체계에서는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 군인·군무원은
보국훈장을 수여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므로 경찰·소방 등 다른 위험
업무 종사 공무원에 비추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
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으
며, 경찰·소방 공무원 또한 국가를 위해 군인·군무원과 같이 위험업무
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하여 경찰·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또한, 현행 수훈 체계에서는 보국훈장의 수훈 자격 기준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추가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으나,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근정훈장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정의

5)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p35-39)

4. 퇴직공무원 포상

마. 훈격결정 기준

1) 훈 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
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2) 포 장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함.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보국훈장 요건에 포함할 경우, 경찰·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유사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공무원 직종(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방재안전직 등)도 동일하게 보국훈장 수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① 경찰·소방 이외에 타 유사 직종도 보국훈장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은 근정훈장 수여를 원칙으로 하는 현 서훈 체제의 훼손 우려, ② 타 법률에 규정된 서훈에 부수하는 혜택 때문에 서훈 체제 자체를 조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③ 기존에 근정훈장을 수여받은 경찰·소방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가보훈부는 보국훈장을 수여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가안전보장 외에 사회안녕 질서유지 등을 포함할 경우 경찰·소방공무원 외에 유사한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려는 개정 요구가 있을 수 있어 국가유공자 인정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 「국가유공자법」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희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군인·군무원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의 수훈 자격기준을 동일한 희생을 하고도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찰·소방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보국훈장을 수여받게 되면, 의료·교육·취업·대부 지원 등 혜택이 있어 33년이상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을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소방청은 사회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에게 보국훈장의 수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보국훈장을 수여받게 되면 의료·교육·취업·대부 지원 등 혜택이 있어 33년이상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